「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사전 제공」 안내

- ※ ① 동의서 원본 스캔 후 ② www.peti.go.kr에서 정보제공 동의 → 금융·부동산에 체크 및 첨부파일 등록 신청 후 ③ 원본은 감사관실 제출
 - → 서류 미흡으로 승인이 거절 될 수도 있으니 제출기간 마감 전까지 승인여부 꼭 확인 필요
- □ 제도개요(공직자윤리법 제6조의5)
 - 등록의무자가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 직계존·비속의 동의를 받아 등록기관을 거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'금융거래(잔액) 및 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'를 제출하는 경우,
 - 위원회는 금융기관,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요청정보를 사전에 조회하여 등록의무자에게 재산등록 신고기간 중에 제공함 으로서 신고 편의 제고
 - ☞ 금융 및 부동산 정보 제공 자료는 참고사항으로 재산등록의무자는 자신의 재산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히 신고하여야 하며, 최종책임은 본인에게 있음.

□ 제출기간

- 수시신고 대상자 : 등록의무자 (최초의무면제재등록퇴직 등)가 된 날
 - 다음 달의 15일까지 (※제출일이 휴일인 경우 전알까지 동위서 원본 제출 완료)
- ※ 매월 1일 등록의무자가 된 자는 그 달 15일까지 동의서 제출
- ※ 2016.6.30. 법 개정으로 기존 제출자가 수시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개정된 동의서로 다시 제출
- 정기변동신고 대상자 : 정기변동신고 개시일 1개월 전까지 (매년 3월~11월말까지)

□ 등록의무자 안내

-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을 원하는 의무자인 경우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감사관실에 수기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, 동의의 효력은 동의철회서 제출 전까지임
- 동의서 미제출자는 재산등록 신고시 사전에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금융기관 등 해당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잔액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신고

□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제출

- 인적사항(의무자와의 관계, 성명, 주민등록번호) 수정이 필요하거나 추가로 동의가 필요한 친족이 있는 경우 별도로 동의서 제출 필요
- 동의서에는 모든 동의자들의 각 의무자와의 관계, 성명, 주민등록 번호 및 동의 확인(자필서명)을 반드시 기재
- 동의서는 **동의확인(자필서명)이 기재된 원본을 제출**해야 하며 FAX나 사본으로 제출할 수 없음
- 이해관계자가 미성년자, 한정치산자, 금치산자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 사실상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대리인이 동의서를 대신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,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 그 대리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나 미성년자의 대리인 경우 불필요

□ 동의서 작성시 유의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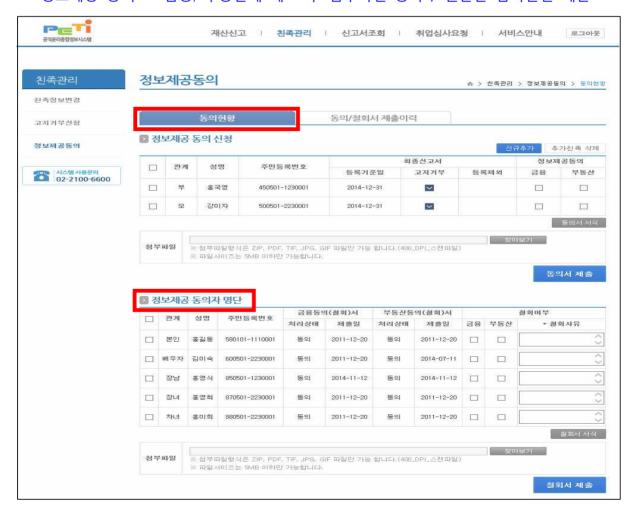
▷ 제출일자	 ▶ 당해연도 정기변동신고에 대한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제공동의서는 매년 11.30까지 제출 및 접수가 가능 ▶ 수시신고에 대한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제공동의서는 등록.신고일로 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5일까지 제출 및 접수가 가능 (매월 1일 등록의무자가 된 자는 그 달 15일까지 동의서 제출)
▷ 동의자 관계	▶ 등록의무자 본인 및 배우자, 직계존·비속만 동의 가능▶ '09.2.3이후 여성등록의무자의 직계존속은 친정부모임을 유의▶ 친족간 공무원인 경우 동의서 각각 제출
▷ 동의자 성명	 ▶ 성명에 '두음법칙이 적용'되거나 '개명'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각 기관에 등재된 이름과 다른 경우 금융거래(잔액) 및 부동산정보 제공이안될 수 있음 예시) 류↔유, 렬↔열, 라↔나 등
▷ 동의자 주민등록번호	▶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한 경우 정보 제공이 안됨
▷ 동의확인 (자필서명)	 ▶ 동의자 자필서명 또는 무인이 반드시 있어야 함 ▶ 인감의 경우는 금융기관이나 읍·면·동사무소에 등록한 인감(서명감포함), 인감증명서 제출 필요 ▶ 동의확인이 흐리거나 확실치 않을 경우 반려처리 됨 ▶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 제출 (미성년자의 경우는 제외)
▷ 기타	▶ 제출기관(해당 등록기관), 제출일자 기재▶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된 직계 존·비속의 정보는 제공되지 않음

□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 철회서 제출

○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제공을 동의했던 의무자(친족포함) 중 결혼, 이혼, 사망 등 신분상 변동 및 변심 등의 사유로 동의를 철 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동의철회서(공 직자윤리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) 제출

□ 금융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현황

- 로그인 후 나타나는 메뉴 중 [친족관리] → [정보제공동의] 메뉴 클릭
- 정보제공 동의 → 금융, 부동산에 체크 후 첨부파일 등록 / 원본은 감사관실 제출



- 「금융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」를 제출한 친족의 금융 및 부동산정보를 재산등록신고서 작성시 제공하여, 등록의무자가 조회된 내용을 참고하여 신고
 - 금융 및 부동산정보 제공 **동의한 친족이라도 고지거부허가자의 경우 조회하지 않음**

'17년 수시 재산신고자 사전 정보제공 추진일정

등록기준일	'16년 12월 (12.1~ '17.1.1)	1월 (1.2~2.1)	2 <mark>월</mark> (2.2~3.1)	3월 (3.2~4.1)	4월 (4.2~5.1)	5월 (5.2~6.1)	6월 (6.2~7.1)	7월 (7.2~8.1)	8월 (8.2~9.1)	9월 (9.2~10.1)	10월 (102-11.1)		12월 (12.2~ '18.1.1)
동의서제출·확인 (매달15일경) * 등록의무자	~1.13.	~2.15.	~3.15.	~4.14.	~5.15.	~6.15.	~7.14.	~8.14.	~9.15.	~10.13.	~11.15.	~12.15.	~ '18.1.15.
조회대상자 선정 (매달21일경) * 윤리업무담당자	~1.23.	~2.21.	~3.21.	~4.21.	~5.22.	~6.21.	~7.21.	~8.21.	~9.21.	~10.20.	~11.21.	~12.21.	~1.22.
정공위위탁 의뢰 (매달25일경) * 정부공직윤리위원회	~1.25.	~2.24.	~3.24.	~4.25.	~5.25.	~6.23.	~7.25.	~8.25.	~9.25.	~10.25.	~11.24.	~12.22.	~1.25.
자료 회신 (매달10일) * 금융기관담당자	~2.10.	~3.10.	~4.10.	~5.10.	~6.10	~7.10.	~8.10.	~9.10.	~10.10.	~11.10.	~12.10.	'18.1.10.	~2.10.
회신자료 검증 이관 (매달15일경) * 정부공직윤리위원회	~2.13.	~3.15.	~4.15.	~5.15.	~6.15.	~7.15.	~8.15.	~9.15.	~10.15.	~11.15.	~12.15.	~1.15.	~2.13.
정보제공 및 금융정보활용입력 (매달16일경부터) * 등록의무자	2.14. ~ 2.28.	3.16. ~ 3.31.	4.16. ~ 5.1.	5.16. ~ 5.31.	6.16. ~ 6.30.	7.16. ~ 7.31.	8.16. ~ 8.31.	9.16. ~ 10.2.	10.16. ~ 10.31.	11.16 ~ 11.30.	12.16. '18.1.2.	1.16. - 1.31.	2.14. ~ 2.28.

【주의사항】—

- ◈ 동의서 제출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 전 평일까지 제출 필요
- ◈ '16.6.30. 이전 동의자(의무자 본인, 친족)도 개정 신규 서식으로 다시 제출 필요
- ◆ ① 사전정보 제공동의자(의무자 본인, 친족)가 개정 서식으로 다시 제출하지 않거나
 ② 윤리업무담당자가 확인·처리하지 않은 등록의무자는 수시 조회 불가
- ◈ 매달 1일 등록의무 발생자(신규임용, 의무면제, 퇴직 등)의 경우 그 달 15일까지 동의서 제출 필요('17.1.1. 등록의무자부터 적용 / 시행령[§5의5①1호] 개정)
 - * (예시) '17.1.1. 재산등록부서 발령→1.13. 까지 동의서 제출/'17.1.2. 퇴직→ 2.15. 까지 동의서 제출

■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3호의2서식]

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

(앞쪽)

- 1. 정보를 제공받을 기관명: 인천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
- 2. 정보제공 목적: 「공직자윤리법」 제5조제1항, 제6조제1항·제2항,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직자 재산 등록·신고를 위한 금융거래잔액 및 부동산 자료의 제공
- 3. 동의서 유효기간: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 동의철회서 수리 전까지
- 4. 등록의무자(정보제공 요청자) 인적 사항

성명	소속	직위	직급 등		

5. 동의자(등록의무자 포함) 인적사항

관계	동의자 성명	주민등록번호	제공 (해당 항목(정보 에 "√" 표시)	정보 제공에 동의함
			금융거래	부동산	(서명 또는 인)
			[]	[]	
			[]	[]	
			[]	[]	
			[]	[]	
			[]	[]	
			[]	[]	

「공직자윤리법」제5조제1항, 제6조제1항·제2항,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산 등록·신고를 위하여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같은 법 시행령 제8조, 「공직자윤리법」 제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자의 금융거래 내용과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을 요청하며, 동의자는 그에 따른 금융거래 정보의 제공사실에 대한 명의인 통보를 받지 않는 데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

인천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

유의사항

- 1. 동의자의 자필 서명 또는 인이 있어야 합니다.
- 2. 동의자가 외국인인 경우,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으십시오.
- 3. 정보제공 범위
- 재산 등록·신고 기준일 현재 명의인의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(신용정보 중 대출잔액에 관한 자료 포함)
- 부동산 보유·등기 및 과세정보(지적, 건축, 주택에 관한 자료 포함)
-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제공기간: 재산 등록·신고기간 중
- 4. 정보제공 금융기관명
 - 「한국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은행
 - 「중소기업은행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은행
 - 「한국산업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산업은행
 - 「한국수출입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
 - 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
 -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투자매매업자·투자중개업자·집합투자업자·신탁업자·증권금융회사·종합금융 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
 - 「상호저축은행법」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
 -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와 농협은행
 -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
 - 「신용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
 - 「새마을금고법」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
 -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회사
 - 「우체국예금・보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체신관서
 - 그 밖에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등